###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34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최수진・임이자・김예지

강선영 • 인요한 • 조정훈

김선교 • 박준태 • 김장겸

김상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원할"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에"를 "관리와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절차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	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u>지원</u>	지원
<u>할</u> 수 있다.	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4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	
사용 및 <u>관리에</u> 필요한 사항은	관리와 자금의 융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관한 기준과 절차 등</u>